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743호
- 발의자 : 이종태 의원
- 발의일자 : 2025. 5. 26.
- 회부일자 : 2025. 5. 29.

### II .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에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보수에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 교육감은 석면자재의 일부파손시 비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6. 3. ~ 6. 7.)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743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내 학교에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자체 개·보수에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은<sup>1)</sup>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는<sup>2)</sup>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sup>3)</sup>

1)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따른 것으로,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6개월 주기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건축물 유지·보수 시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의 제공 및 공사 감시·감독 등을 수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의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시 파손된 부위 면적이 작은 경우(부분보수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현장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메움제, 코킹제 등으로 파손 부위를 메워 주거나 덮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석면방출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과 용구로 습윤제나 비산방지제, 분무기, 밀폐장치, 호흡보호구 및 고글, 석면 헤파청소기 등을 제시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석면 자재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1] 소규모 시설물(부분보수 면적 50m<sup>2</sup> 미만) 자체 개·보수 시 필요한 용품 및 용구<sup>4)</sup>

품명	규격 및 내용	비고
습윤제/ 비산방지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게 도포하여 고형 안정화 시킨 후 해체작업 또는 원상유지(필요시 사용)	20ℓ/1통 70,000원 (5개사 평균), *231원/m <sup>2</sup>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 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 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4) 교육부(2019.1.),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개정)」, 42쪽.

품명	규격 및 내용	비고
분무기	용재를 석면건축자재에 분무, 흡인시켜 고형안정화 할 휴대형 분무기	44,900원/개
밀폐장치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의 하단을 폴리에틸렌시트로 밀폐하는 장치	벽면 442원/ $m^2$ , 바닥면 329원/ $m^2$
호흡보호구	석면작업에서 유해한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검정기준에 특급이상의 검정필이어야 함	35,000원/개
고글	반면마스크의 경우 착용	4,600원/개
마스크필터	방진필터 소모성 자재로 성능검정 특급 이상의 고성능 필터(특급)	4,540원/1조 (1회용)
보호복	전신을 덮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습식 작업에도 착용할 수 있는 소재의 고형 고형미립자 차단 보호복	6,000원/벌(1회용)
보호덧신	소모성 자재 방진 덧신	1,800원/켤레(1회용)
불침투성 장갑	작업자의 손이나 손목을 보호하는 불침투성 장갑	276원/켤레(1회용)
안전테이프	바리케이드 테이프, OPP 석면 해체·제거 테이프	1,000원/개(18m 기준), *56원/ $m^2$
폐기물봉투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한 0.15mm 두께의 불침투성 비닐봉투	80×120mm - 234원/장
스티커	폐기물 봉투에 부착	150원/ $m^2$
석면 혼파청소기	고밀도의 특수 혼파필터가 장착된 석면전용 청소기	350,000원/개
경고표지판	출입금지 경고 표지	20,000원/개
안전모	작업시 낙하물로부터 보호	6,000원/개

※ 건축물 유지관리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한국석면환경회, 2014

학교건축물 석면실태 조사자료 검증 및 연차별 관리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2011.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 보유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자체 석면 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용품과 용구를 구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규모 석면 보수 절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석면은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석면폐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긴 잠복기와 뚜렷한 치료 방법이 부재한 특성으로 인해 유해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바, 동 개정조례안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석면 자재의 경미한 손상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 및 용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미하여 학교 자체 경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며, 석면 자재 손상 정도에 따라 해체작업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sup>5)</sup>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방학이나 연휴 중 800m<sup>2</sup> 미만의 소규모 석면제거공사를 희망하는 학교에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40개교에 16억 7천 6백만원, 2025년 26개교에 6억 7천 9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sup>6)</sup>
- 그러나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소규모 보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소규모 석면제거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문의 실효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서울시 내 석면건축물로 지정된 학교 대부분이 교육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품이나 용구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의한 소규모 시설물(부분보수 면적 50m<sup>2</sup> 미만) 자체 개·보수 시 작업자 등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5)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

6)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1070번, 4차)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6239, 2025.6.4.)

-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석면 건축물로 지정된 학교 246개교 중 교육부 지침에서 규정된 용품과 용구를 모두 구비한 경우는 12개교에 불과했습니다.

[표-2] 석면건축물 지정 학교의 자재 자체 개보수 필요 용품·용구 보유 현황<sup>7)</sup>

(단위 : 개교, %)

구분	보유 학교 수	미보유 학교 수	보유비율
습윤제/비산방지제	71	175	28.9
분무기	158	88	64.2
밀폐장치	31	215	12.6
호흡보호구	120	126	48.8
고글	177	69	72.0
마스크필터	118	128	48.0
보호복	123	123	50.0
보호덧신	94	152	38.2
불침투성 장갑	128	118	52.0
안전테이프	116	80	67.5
폐기물봉투	103	143	41.9
스티커	92	154	37.4
석면 해파청소기	20	226	8.1
경고표지판	126	120	51.2
안전모	226	20	91.9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구와 용품의 보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7)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1070번, 5차)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6473, 2025.6.12.)